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

2021. 6. 4 (금) 기준

*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검역대응 절차

□ 유증상자

구분	진단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무증상자

○일반적인 대응 원칙

구분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 장기 체류 외국인 ⇨	⇨ 제출	⇨ 제출	⇨ 보건소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능동감시)	⇨ 6~7,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총 2회)
		⇨ 미제출	⇨ 임시생활시설 (입소비용 본인부담)	⇨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능동감시)	⇨ 6~7,12~13일째 추가 진단검사 실시(총 2회)
	⇨ 미제출	⇨ 제출	⇨ 보건소	⇨ 자가격리	⇨ 격리해제전 검사
		⇨ 미제출 *외국인 입국불허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격리해제전 검사
단기 체류 외국인 ⇨	※ 세부절차 향후 마련	⇨ 제출	⇨ 임시생활시설	⇨ 시설격리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격리해제전 검사
		⇨ 미제출	⇨ 입국불허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하여 출국한 '예방접종완료자'만 제출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서울 거주자 한함)

* 출처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① 자차 이용안내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여권, 항공권 지참	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13만원, 구역별 정액요금, 24시간 운영)

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 ▶ T1은 12~13번 게이트 중간 ▶ T2은 2~3번 게이트 중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 여권, 항공권 지참 ※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 예약 후 익일검사	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 ※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	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

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이용료 : 16,000원)

입국 수속 후, 인천공항 T1(1층), T2(지하1층) 대합실 이동	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 ▶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 구청차량 요청가능)	버스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보건소 선별진료소) 로 이동	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 (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

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출처:출입국관리사무소

구 분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 신청 불가
시행일	20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2021.1.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21.1.8(금)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제도 2020.12.10부터 시행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구 분	내 용
도입목적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신고 시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정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숙박업자의 신고의무	외국인이 숙박할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고나서에 신고

*경보단계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양성 자가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입국일 기준, 21.5.1~31까지)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173개 국가 대상]

전액지원 국가(64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넹,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르기즈공화국, 캐나다, 쿠웨이트,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일부지원 국가(58개국)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세이셸,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미지원 국가(51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바누아투,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솔로몬제도, 스위스, 수리남,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조지아, 지부티,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공화국, 헝가리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당신이 더욱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Already, We're ready

Korea ETA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21년 5월부터 시행

대상국가

112개국(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상국가는 홈페이지 확인

신청방법

www.k-eta.go.kr 접속
(PC 및 모바일앱)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

수수료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
- 시험운영 기간('21. 5월 ~ 8월)에는 수수료 면제

법무부

K-ETA 주요 안내사항

신청방법

대한민국 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 가능, 최대 30명까지 동반신청 가능

결과확인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K-ETA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한화1만원(약 9~10달러, 부가수수료 등 별도) 입니다.

재신청

유효기간 내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정보 (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및 정보를 오입력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 면제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안내 및 문의

K-ETA 대표 홈페이지(www.k-eta.go.kr)
K-ETA 안내 및 공지사항 확인

K-ETA 센터에 이메일 문의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21. 5월부터)
-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문의 가능

대상 국가

사증면제 국가(66개국) 및 무사증 허용국가 (46개국) 112개국 국민

가이아나	모나코	수리남	체코
과테말라	모로코	스웨덴	칠레
괌	모리셔스	스위스	카자흐스탄
그레나다	몬테네그로	스페인	카타르
그리스	몰타	슬로바키아	캐나다
나우루	미국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네덜란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노르웨이	바베이도스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바티칸 시국	아이슬란드	키리바시
뉴칼레도니아	바하마	아이티	태국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터키
대만	벨기에	안도라	통가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투발루
도미니카공화국	보츠와나	앤티가바부다	튀니지
도미니카연방	불가리아	에스와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독일	브라질	에스토니아	파나마
라트비아	브루나이	에콰도르	파라과이
러시아	사모아	엘살바도르	팔라우
레소토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페루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오스트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세르비아	온두라스	프랑스
리하텐슈타인	세이셸	우루과이	피지
마셜제도	세인트루시아	이스라엘	핀란드
마카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이탈리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일본	호주
멕시코	솔로몬제도	자메이카	홍콩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21개 국가

가이아나, 괌, 뉴칼레도니아,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모나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티칸, 베네수엘라, 산마리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팔라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당신이 더욱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Already, We're ready

Korea ETA



법무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신속,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1년 5월부터 K-ETA를 받음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신속한 입국심사

관광정보 안내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과 절차

K-ETA 대표 홈페이지 www.k-eta.go.kr에서 PC와 모바일(앱)로 신청

신청

1단계 이메일 인증

2단계 개인 및 여행정보 입력

3단계 수수료 결제

준비사항: 유효한 여권, 이메일 주소, 수수료, 얼굴사진

심사 및 결과확인

심사 및 결과확인

K-ETA 허가

K-ETA 불허

신청 후 24시간 내에 이메일로 결과 통보

K-ETA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 및 사전여행허가서 출력 가능

발권 및 탑승

K-ETA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 가능

입국심사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로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심사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6월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6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공지사항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21.5.2.)>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 제외**

***6월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13개국**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칠레

※ 매월 유행국가 공지 예정

【적용기간】

○ '21. 6. 1. ~ 21. 6. 30. 입국자